

COPY (실내) 복사본

시험확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

시료명	뉴방화코트플러스 수성형	신청자	오진수, 김장연
접수번호	EHA-000086	시료채취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삼화페인트공업 시화공장 물류창고
시료채취 일시	2017년 10월 17일	접수일자	2017년 10월 16일
시료채취 방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관련 지침	검사목적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
대상건축자재	접착제, 바닥재, 페인트, 기타	실란트(sealant), 퍼티(putty), 벽지,	

2.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판정	적합
기준 초과항목	없음

나. 항목별 검사결과

검사 항목	기준 (mg/m ² · h)	시험 결과 (mg/m ² · h)
TVOC 방출량	2.5 이하	0.900
톨루엔 방출량	0.08 이하	검출한계 미만 (검출한계 : 0.005)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0.02 이하	검출한계 미만 (검출한계 : 0.005)

2017년 11월 13일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위변조 확인용 QR code